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절차 착수 시한 규정 >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783호)

2024.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임 명 현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절차 착수 시한 규정(안 제12조제5항 신설) ...	2
※ 참고자료	
1. 연구기관 원장 선임 절차	6
2.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만료일과 상위평가 확정일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4. 8. 13.

다. 회 부 일 : 2024. 8.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에 대하여 그 임면권자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이사장으로 하고 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장의 임기 만료 시점에 대비하여서는 특별한 조치를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원장의 임기가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후임 원장이 제때에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바, 이러한 사태는 연구기관이 효과적인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발전을 빈틈없이 추진하는 데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

이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의 임명을 위한 첫 단계로서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 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연구기관 후임 원장 임명 절차 착수 시한 규정(안 제12조 제5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생략) <신설> ⑤·⑥ (생략)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대하여 재직 중인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나. 검토의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 원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기관 경영에 책임을 지는 직책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기만료 이후 후임자 선정 절차 추진 시점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 상당한 기간 동안 후임 원장이 임명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¹⁾이 있었음.²⁾

개정안은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후임 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를 착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만료 이후 후임 원장 임명 지연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입법 취지는 타당한 점이 있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서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착수하도록 규정하려는 절차는 연구기관 후임 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인데, 해당 절차는 원장의 재선임 절차가 부결된 이후에 실시하는 절차([참고1] 연구기관 원장 선임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원장의 선임절차 착수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상 연구기관 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인 경우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로 연구기관 원장의 재선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³⁾ 연

1) '22년 5월 이후, 18개 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24년 8월 현재 후임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8개의 기관을 제외하고 10개 기관의 후임 기관장 선임까지는 평균 177일이 소요되었음.

2) 참고로, 임기가 만료된 연구기관 원장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 각 기관의 정관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원장의 임기가 자동 연장됨.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장의 임면 및 임기) ① 원장은 연구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구기관 기관평가는 1차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기관을 평가하고(자체평가), 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연구회의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한 후(상위평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됨.

그런데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연구기관 원장의 임기 종료일과 연구기관 상위평가 확정일을 살펴보면, 상위평가 결과가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우는 전체 22건 중 7건(32%)으로 나타남([참고2]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만료일과 상위평가 확정일).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연구기관 후임 원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는 절차를 착수하도록 법에서 규정한다면, 연구기관 기관평가를 위한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일정이 기관평가 일정에 종속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례 부칙을 통해 개정안 시행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그 후보자를 공개모집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장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상임(常任)으로 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삭제

⑤ 원장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이사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의 평가 결과 원장 재임기간 중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장을 재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2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원장 재임기간 중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 평가기준) 법 제12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사회가 의결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 및 경영 내용에 대한 평가결과가 원장의 경영혁신으로 평가등급 산정방식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당시 재직 중인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서도 법을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9

참고1

연구기관 원장 선임 절차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9.)

절 차	세부내용	비고
기관 평가 결과 확정	연구회 자체평가 → 연구회 자체평가 확정(이사회) → 과기정통부 상위평가	
↓재선임 결정의 경우		
재선임 절차 추진	해당 원장 재선임 의사 확인 → 재선임 여부 결정(이사회)	
↓재선임 부결의 경우		
원장 선임계획 수립		
↓		
원장 선임방식 결정	의견수렴 및 결정 ↓ 이사회 의결 - 공모방식 또는 추천방식 중 택일 - 공모 또는 추천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함 - 원장 선임 추진계획 확정(이사회)	
↓공모의 경우		
원장후보자 모집 공고	- 주요 일간지 등에 공고(10일 이상) - 자격기준 - 해당 연구분야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 조직경영에 대한 경륜과 식견을 가진 자 - 해당 연구기관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기타 원장후보자 공모에 필요한 사항 등	개정안에 따른 3개월 전 착수 단계
↓		
원장후보자 접수	서류 제출	
↓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	- 이사위원 선정 → 외부전문가 추천 → 외부전문가 선정(이사회) -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7명) : 이사위원(5명)+외부전문가(2명) - 이사위원 : 이사장, 관계중앙행정기관 당연직이사(2명), 민간이사(2명) - 외부전문가 : 심사위 미참여 이사가 추천(이력서, 추천서)한 인사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	
↓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 개최 (원장후보자 추천)	- 응모자 심사 후 상위 3인 이내를 무순위로 이사회에 추천 단 응모자가 3인 이내인 경우 심사위의 심사 생략 가능 - 제1차 원심위 : 서류심사 6배수 선정 - 제2차 원심위 : 면접심사 3배수 선정	
↓		
원장 선임 이사회 개최	심사위에서 추천된 3인의 후보자 중 1인을 선임	
↓		
원장 임명	이사장	

참고2

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만료일과 상위평가 확정일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9.)

구분	기관명	상위평가 확정일	원장 임기 종료일	임기종료일 대비 평가시기		3개월 이전 확정
				일수	월기준	
202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1.5.28.	2021.7.8.	41일전	1.37개월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사임)	2021.5.28.	2021.7.23.	56일전	1.87개월전	
2022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1.24.	2022.3.31.	66일전	2.20개월전	
	한국원자력연구원	2022.1.24.	2022.3.31.	66일전	2.20개월전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22.1.24.	2022.4.30.	96일전	3.20개월전	✓
	녹색기술센터	2022.1.24.	2022.4.30.	96일전	3.20개월전	✓
	한국화학연구원	2022.9.22.	2022.11.10.	49일전	1.63개월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2022.9.22.	2022.12.23.	92일전	3.07개월전	✓
202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22.9.22.	2023.2.23.	154일전	5.13개월전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2022.9.22.	2023.2.23.	154일전	5.13개월전	✓
	한국기계연구원	2023.1.19.	2023.4.12.	83일전	2.77개월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23.5.24.	2023.7.19.	56일전	1.87개월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2023.5.24.	2023.9.27.	126일전	4.20개월전	✓
	한국재료연구원	2023.9.21.	2023.11.19.	59일전	1.97개월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023.9.21.	2023.11.19.	59일전	1.97개월전	
2024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4.2.1.	2024.3.22.	50일전	1.67개월전	
	한국한의학연구원	2024.2.1.	2024.4.8.	67일전	2.23개월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24.2.1.	2024.4.8.	67일전	2.23개월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24.2.1.	2024.4.8.	67일전	2.23개월전	
	한국식품연구원	2024.2.1.	2024.4.25.	84일전	2.80개월전	
	안전성평가연구소	2024.2.1.	2024.5.22.	111일전	3.70개월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4.5.31.	2024.8.16.	77일전	2.57개월전	